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승강기 안전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 제도 정비〉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2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 제도 개선·보완	3
2. 지정검사기관의 평가제도 도입, 평가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및 지정 취소 시 지정검사기관 모집 신청 제한	12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위탁	16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 부
2. 제출연월일 : 2024. 7. 12.
3. 회부연월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전국적인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을 신규로 지정하려는 경우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 수행 지역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규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사전심사(안 제36조의2제3항 신설)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모집(안 제36조의2제4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안 제36조의2제5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Ⅲ. 검토의견

1. 승강기 지정검사기관 지정 제도 개선·보완

개정안은 승강기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함)의 지정과 관련하여 ①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이하 “검사대행지역범위”라 함)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②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검사대행 지역범위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③ 행안부장관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④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2.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② (생략) <u><신설></u>	----- ----- ② (현행과 같음) <u>제36조의2(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 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 정할 수 있다.</u> <u>②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 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정기 검사 업무를 대행할 지역적 범위 (이하 “검사대행지역범위”라 한 다)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 지정 을 신청하여야 한다.</u> <u>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 정 신청을 하려는 법인·단체 또 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을 갖추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검사대행지역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u> <u>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u>

현행	개정안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u>사 예상 물량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u> ⑤ <u>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u>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삭 제> 제80조(벌칙) ①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9. ----- ----- 제36조의2제1항 ----- -----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0. 제36조의2제1항 ----- ----- -----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1항 ----- ----- ----- -----
22. ~ 28. (생략)	22. ~ 2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¹⁾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3개 이상의 시·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제2호에 따른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른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5. 승강기사업자 또는 승강기사업자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²⁾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 안전검사의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³⁾ 또는 지정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⁴⁾하고 있음.

승강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월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검사기관은 총 5개소이고, 이들 지정검사기관이 실시한 승강기 정기검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2023년에도 전체의 약 17.8%에 불과하였음.

[지정검사기관 현황(2024. 4. 기준)]

기관명	지정일	업무범위	검사인력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2019. 7. 1.	서울, 인천, 경기	78명
(재)승강기기술진흥원	2021. 3. 2.	서울, 경기, 대구	42명
(재)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	2022. 6. 15.	경기, 서울, 인천	31명
(재)대한승강기안전재단	2022. 6. 15.	경기, 대전, 충남	36명
(재)한국승강기안전원	2022. 6. 15.	광주, 부산, 대전	42명

자료: 행정안전부

2) 「승강기 안전관리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정검사기관별 정기검사 실시 현황]

(단위: 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632,897	584,474	578,062	699,230	749,90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626,993 (99.1%)	546,087 (93.4%)	513,520 (88.8%)	611,603 (87.5%)	616,676 (82.2%)
지 정 검 사 기 관	소 계	5,904 (0.9%)	38,387 (6.6%)	64,542 (11.2%)	87,639.5 (12.5%)	133,229 (17.8%)
	(재)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5,904	38,387	50,255	51,048	57,578
	(재)승강기기술진흥원	-	-	14,287	29,331	30,039
	(재)한국승강기안전진흥원	-	-	-	1,668	13,594
	(재)대한승강기안전재단	-	-	-	2,910	18,005
	(재)한국승강기안전원	-	-	-	2,670	14,013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인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승강기 검사물량 대비 인력이 부족한 지역이 있는 상황이므로 승강기 설치 대수가 최근 추세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⁵⁾ 지정검사기관의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5) ('20년) 75만대 → ('21년) 78만대 → ('22년) 81만대 → ('23) 84만대로 매년 약 3만대씩 증가

[시도별 승강기 검사물량 및 인력 현황(2024. 4. 기준)]

(단위 : 대, 명)

구분	검 사 물 량	필요인력 (A)	'24년 예상 검사인력				과부족 (B-A)
			소계 (B)	공 단		지정검사기관	
				정규직	기간제 등		
계	1,032,507	1,527.4	1,527.8	1171.8	127	229	+0.4
서울	218,905	323.8	319.5	205.5	22	92	-2.6
부산	69,426	102.7	109.4	93.4	8	8	+8.7
대구	49,379	73.0	75	61	8	6	+2.0
인천	82,036	121.4	126.8	96.8	11	19	+5.4
광주	25,002	37.0	38.3	29.3	3	6	+3.3
대전	31,392	46.5	48.1	37.1	4	7	+0.6
울산	20,878	30.9	29.3	26.3	3	0	-1.6
세종	14,456	21.4	23.3	21.3	2	0	+1.9
경기	262,706	388.6	376.2	276.2	30	70	-8.4
강원	29,930	44.3	49.3	43.3	5	1	+5.0
충북	28,083	41.5	40.1	35.1	5	0	-1.4
충남	34,554	51.1	51.6	37.6	4	10	+0.5
전북	30,898	45.7	50.4	37.4	5	8	+4.7
전남	33,582	49.7	49.6	43.6	4	2	-0.1
경북	35,455	52.4	52	48	4	0	-0.6
경남	46,679	69.1	63.6	57.6	6	0	-5.5
제주	19,146	28.3	25.3	22.3	3	0	-3.0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시 지역적 범위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별 승강기 정기검사 예
상물량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검사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검사기관이 확대될 경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만, 현행법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⁶⁾하고 있고, 이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⁷⁾하고

6)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및 검사설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현장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영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업무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번호
 2. 지정검사기관의 명칭
 3. 지정검사기관의 주소(사업장을 포함한다)
 4. 업무수행범위
- ⑥ 지정검사기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명칭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변경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있는바, 개정안 중 지역적 범위를 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거나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탄력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현행법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2. 지정검사기관의 평가제도 도입, 평가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 및 지정 취소 시 지정검사기관 모집 신청 제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및 수행 실태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2회 이상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업무정지,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신청 뿐 아니라 지정검사기관 모집에도 응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5항, 제37조, 제38조).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36조의2(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생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	제37조(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u><삭 제></u> ① -----

현행	개정안
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u>제1항</u>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u><신설></u> 6. ~ 8. (생략) ③ (생략) ④ <u>제2항</u>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u>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u> ⑤ <u>제2항</u>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37</u>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6조의2제1항----- ----- <u>5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u>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u>----- ----- ----- <u>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 모집에 응할</u> -----. ④ <u>제1항</u>----- -----. 제38조(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① ----- <u>제37</u>

현행	개정안
<u>조제2항제3호</u>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u>조제1항제3호</u>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⁸⁾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그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검사품질의 관리 절차 중 하나로 지정검사기관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지정검사기관의 평가 및 평가 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승강기와 관련한 사고 발생은 인명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안전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승강기 설치 대수에 따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및 신규 지정검사기관의 추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체계적으로 보다 강

8)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화된 검사품질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인정됨.

[지정검사기관 검사품질 관리 절차]

구분	주요 내용
교육	① 공단 검사기법 및 검사판정 표준화 교육 ○ (방법) 합동검사(검사조 구성: 공단 1명 + 지정검사기관 1명) ○ (기간) 연 1회 1개월 ※ 신규기관의 경우 3개월
점검	② 검사 완료된 승강기 표본 점검 ○ (대상) 1만대당 10대(조건부 합격 승강기 위주) ○ (시기) 분기별 불시 표본점검 ③ 공단과 지정검사기관 간 교차 검사 ○ 2년 연속 지정검사기관이 검사한 승강기는 공단에서 정기검사
평가	④ 지정검사기관 운영실태 평가 ○ (방법) 서류 및 현장평가(평가단 구성: 공단+민간 전문가) - 평가표(지정조건 충족 여부, 검사운영 실태, 표본점검 결과 등) ○ (시기) 매년 10월(전년도 10월 ~ 당해연도 9월)
환류	⑤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검사물량 배분 ○ (방법) 검사품질 평가결과 반영, 지정검사기관별 검사물량 배분 ○ (시기) 매년 11월(공단 보고 → 행안부 승인)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평가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하여 지정취소, 업무정지, 과징금, 지정검사기관 모집 참여 제한 등 행정 제재수단의 근거도 함께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위탁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8조).

현행	개정안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2. 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지</u> <u>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u>
8. ~ 11. (생략)	8.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한국승강기안전공단⁹⁾(이하 “공단”이라 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설립되었

9)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으며,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¹⁰⁾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이에 따라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업무¹¹⁾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정기검사,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의 운영 현황 및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추가함으로써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의 품질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4.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대행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검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현재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와의 연관성 및 공단의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승강기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보다 실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 데,

현행법상 공단은 승강기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업무를 대행¹²⁾하고 있는바, 지정검사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정기검사 업무는 공단이 수행하는 안전검사에 포함되는 업무로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에 있어서는 공단과 지정검사기관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지정검사기관의 평가 업무를 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신뢰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정검사기관 평가 업무의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위탁과 관련 하여서는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및 신뢰

1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성 담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봄.

문 의 처
02)6788-5351